

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0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10. 20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민선8기 공약사업: 교육경비 지원·자율성 확대
- 현행 통학택시비 지원대상이 제한적이므로 학생들에게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지원목적을 확대 수정(안 제1조)
- 나. 통학생의 정의를 중·고등학생으로 확대(안 제2조제2호)
- 다. 지원대상을 학교교육과정을 목적으로 통학하는 학생으로 확대(안 제3조)
- 라. 그 밖에 「법령입안 심사기준」,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(안 제1조, 제2조, 제4조제2항, 제5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별첨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:

- 1) 입법예고(2022. 8. 26. ~ 2022. 9. 18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
- 4) 성별영향평가: 해당없음

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야간 통학 부담을 해소하기”를 “교육 기회를 보장하기”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”를 “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중·고등학교”로 한다.

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통학택시비 지원대상은 학교 교육과정을 목적으로 대중교통(시내버스를 말한다)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에 통학하는 학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”를 “제1항에도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소요비용”을 각각 “필요한 비용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23조에 따라 평창군 농촌학교 학생의 <u>야간 통학 부담을 해소하기</u> 위하여 그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통학생”이란 농촌학교 중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의 <u>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</u>을 말한다.</p> <p>3. (생 략)</p> <p>제3조(지원대상) <u>통학택시비 지원 대상은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 대중교통(시내버스를 말한다)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통학생으로 한다.</u></p> <p>제4조(지원신청) ① (생 략)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 <u>교육 기회를 보장하기</u> ---- ----- ----- 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중·고등학교----- -----.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지원대상) <u>통학택시비 지원 대상은 학교 교육과정을 목적으로 대중교통(시내버스를 말한다)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에 통학하는 학생으로 한다.</u></p> <p>제4조(지원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</p>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군수는 신청의 효율적 업무를 위하여 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및 각 학교장과 협의하여 신청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방법) ① 군수는 제4조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통학생의 보호자와 통학택시에 서면으로 알리고, 그 이용 실적에 따라 관련자료 확인을 거쳐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택시에 지급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의 소요비용 중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통학생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.

③ (생략)

② 제1항에도-----

-----.

제5조(지원방법) ① -----

----- 필요한 비용

-----.

② ----- 필요한 비용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

□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(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, 수업료,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농어업인에게 제1항에 따른 경비와 체험학습비 등 부대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□ 초·중등교육법

제2조(학교의 종류)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
1. 초등학교
2.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3.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4. 특수학교
5. 각종학교

비용추계서(미첨부 사유서)

1. 비용발생 요인

-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신청 증가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행정지원국 인재육성과장 장연규
연락처	(033) 330 - 2020